국 무 조 정 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19.(목)

“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푼다”, 국회·정부, 상법 개정 본격화

- 국무총리비서실·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「상법」 개정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
- 도덕적 해이 없는 범위 내, 15세 미만 재난보험 예외 인정 방안 집중 논의
- 채이배 비서실장, “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”

□ 국무총리비서실은 11월 19일(목)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**국회의원들과 공동**으로 **「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」**를 개최했다.

■ 일시/장소 : 2026. 11.19.(목) 13:30~15:30 /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

■ 참석자 : (정부) 국무총리비서실장,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, 시민사회비서관, 법무부, 금융위원회, 행정안전부, 포항시 등 관계자
(국회) 서영교·김의겸·박상혁·강준현·김한규·황명선·김남희 국회의원 등
(민간)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(좌장),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(발제), 이보미 한남대학교 교수(발제),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,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상무,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일반·장기보험본부장 등

□ 이번 간담회는 현행 **「상법」 제732조**의 **제도적 모순**을 **해결**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**현행 「상법」** 제732조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이 범죄에 희생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**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**을 **원천 무효**로 규정하고 있다.

○ 그러나 **시민안전보험*** 같은 **공익적 단체보험**까지 **예외 없이 차단**되면서, 보호받아야 할 **재난 피해 미성년자 유가족**이 **사각지대**에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.

*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·가입하는 공익적 단체보험

○ 2022년 **태풍 힌남노**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가족 중 **열네 살 중학생**의 유가족만 **시민안전보험**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. **12·29 여객기 참사**에서도 **15세 미만 희생자** 여덟 명의 유가족이 동일한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다.

□ 국무총리비서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.

○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, 상법 개정안 **발의 의원** 및 **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위원**, **전문가·현장관계자**들이 함께, **아동보호**라는 입법 취지를 지키면서 **예외를 인정**할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논의했다.

□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"**이번 정기국회**에서 **상법 개정안이 통과**될 수 있도록 **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**하며 끝까지 챙기겠다"고 말했다.

○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부 등 **관계부처와 꼼꼼하게 검토**하고, 향후 **법안 심사과정**에서 **필요한 지원**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	책임자	팀 장 강현수 (044-200-2834)
		담당자	사무관 양희경 (044-200-283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